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신한도거래 약정서
(한도거래용, 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인)
주 소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전여신(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한도거래를 함에 있어"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 약관을 포함합니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절 일 반 약 정

제1조 여신한도

① 여신과목, 약정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기타 거래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청여신은 각 여신과목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합니다. 약정통화와 실제 거래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고객전신환매도율 등 은행이 정하는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계산합니다.

여 신 종 별 한 도		여 신 과 목 별 한 도		이자율(보증료) 등		
구 분	금 액	여 신 과 목	금 액	※ 변동금리 적용시 아래 금리약정사항참조)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금 원	☐ 고정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변동	기준금리 () +	%
총 한 도		금		원정		

※ 변동금리 적용여신인 경우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자(보증료)율 란에 명확히 기재하여 (주)한국씨티은행
CR-A-319 (2012. 2)

야 합니다.

1. 시장금리부여신 시장금리 유통수익률 (CD91일물(180일물), 금융채1년물, 산금채1년물, 회사채3년물, 국고채3년물, LIBOR1개월물(3개월, 6개월, 12개월물 등) + _____ % (예시 : CD91일물 유통수익률 + 1.2 %)
2. 기준금리부 여신 : 기준금리 (기업 CPR, CTPR, CSPR 등) + _____ % (예시 : 기업 CPR + 1.2 %)
3. 수신(수탁)금리 연동여신 : 수신(수탁)금리 + _____ %
4. 고시금리부 여신 : 고시금리 + _____ %

- ② 본인의 필요로 은행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여신을 취급한 경우(신규여신 과목추가를 포함합니다)에는 그에 따른 초과취급분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 월 일 까지로 합니다.

제3조 이자·지연배상금

- ① 여신의 이자율은 제1조 제1항과 같이 하고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당좌대출 및 통장대출거래인 경우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 도래전이라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화여신 및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에 따릅니다.
- ⑥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⑦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 [여신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1개월 미만은 연 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연 7%, 3개월 이상은 연 8%를 적용합니다. 단, 통장대출(당좌대출 포함)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6%를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 18%로 합니다.

제4조 여신이자율의 변동

- ① 「시장금리부 여신」 이라함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을 말하며, 시장기준금리란 원화여신의 경우 여신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에 은행이 고시하는 직전영업일의 CD91일물(180일물), 금융채1년물, 산금채1년물, 회사채3년물, 국고채3년물의 유통수익률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여신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금리의 변동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1. CD91일물(180일물)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6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한국증권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180일물) CD유통수익(중가기준)」을 말하고, 이자율은 3개월(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2. 금융채1년물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1년물 금융채AAA 증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1년마다 변동됩니다.
 3. 산금채1년물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1년물 산금채AAA 증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1년마다 변동됩니다.
 4. 회사채3년물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에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3년물 회사채AA- 증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3년마다 변동됩니다.
 5. 국고채3년물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에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3년물 국고채AAA 증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3년마다 변동됩니다.
 6. LIBOR1개월물(3개월, 6개월, 12개월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영국 런던 오전 11시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있는 통신회사(Reuters, Teleg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말하고, 이자율은 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② 「기준금리부 여신」 이란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 *(기업 CPR, CTPR, CSPR 등)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을 말하며, 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행이

* 기업 CPR : 기업 Citi Prime Rate / CTPR : Citi Trust Prime Rate / CSPR : Citi Short-term Prime Rate

- ## 제5조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365

1) 중도상환수수료율: 중도상환전일의 CD유통금리 - 현재 이자징수하고 있는 CD유통금리
(단, 최저수수료율은 0.5%로 적용한다)

-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일수)/(대출기간)

☐ 기타 : (

「중도상환여신금액」은 약정된 만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여신금액을 의미하며 분할상환여신인 경우 약정한 분할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여신금액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따라 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등의 변경 시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담보 소유권자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약정한 여신한도와 거래기간 내에서 취급한 각 여신의 이행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이 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 여신의 이행기는 각 여신 취급 시에 별도로 정하기로 합니다.
2. 제1호의 약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각 여신 취급 시에 은행에 제출한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일은 은행의 재량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감액으로 인한 한도초과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될 때
 - 마.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때
 -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9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외화여신 등 제1조의 여신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적립신탁여신의 상계특약

- ① 적립신탁여신에 대하여 관련 월 적립금이 계속하여 4회 이상 연체되는 경우, 여신기간 만료일이전이라도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상계 시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 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권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주의 : 채무자 본인명의 담보인 경우에만 본란을 사용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담보 이외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목적물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접근 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	%	%	%
자 기 자 본 비 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 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4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 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5조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조치

- ① 여신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작성 명의상의 허위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 외에 신규여신의 취급중단, 기타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사항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신규여신 취급중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진술 및 보장, 기한전 변제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약정체결일 및 각 인출일에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본인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본인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의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지급은 (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 본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본인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본인의 재정상황 또는 본인의 이 약정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은행에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9. 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10. 본인은 각 여신실행일에 본인 및 본인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여신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여신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5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이 이 약정상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본인이 이 약정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5. 본인이 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여신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해당 여신 금액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영업상 이익의 상실 등 본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외화여신에 대한 특약사항

-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여신이 외화여신인 경우 아래 각 항의 특약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 ② 본인은 본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소송, 압류, 집행,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주권면제의 주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다만,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제외함), 본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은행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해당 외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은 상환 당일의 대고액전신환매도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외화로 환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은행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은행이 본인에게 그 잔여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2 절 (일중)당좌대출 및 통장대출거래 특별약정

제18조 대출금지급방법 등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통장대출 등록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이자의 원가 또는 어음·수표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 ⑤ 대출금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⑥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이자원가의 제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여신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제3조 및 제18조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원가는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 간 지체한 때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0조 미원가 금액의 입금 및 변제충당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계좌에 부족금액을 곧 입금하기로 하며,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21조 당좌대출에 관한 특약

- ① 당좌대출의 1회의 대출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③ 제8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22조 일중당좌대출에 관한 특약

- ① 제7조 소정의 “상환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중당좌대출은 당일의 귀행 영업시간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 ② 제3조 소정의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중당좌대출에 대하여는 매일의 대출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연 %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당일 영업시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하여는 익일부터 귀행의 은행계정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③ 제3조 소정의 “이자지급방법 및 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발생된 일중당좌대출 이자는 다음달 첫 영업일에 후급한다.

제 3 절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	---	-----

(수입인지 첨부란)